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p><u>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u> <u>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u> <u>운영에 관한 고시</u></p>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제2항 후단,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절차와 위탁받는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u> <u>심사업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u> <u>운영에 관한 고시</u></p> <p>제1조(목적) ----- ----- 제329조제5항제3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10항에 따른 ----- ----- 우수업체 공인 심사업원 업무의 위탁 절차와 수탁기관----- -----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 업무 범위 명확화에 따른 고시 명칭 개정 ○ 근거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1 -

<p>제2조(위탁업무)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공인운영고시"라 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예비심사와 서류심사(이하 "심사업무"라 한다)를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조(수탁기관의 요건) 관세청장이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에 관하여</p>	<p>제2조(위탁업무) ----- ----- ----- ----- ----- 예비 ----- 심사업원 업무와 서류심사지 원 업무(이하 "심사업원 업무")----- -----.</p> <p>제3조(수탁기관 지정 요건) --- --- 심사업원 업무를 ----- ----- ----- 별표 1----- ----- ----- ----- 전산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업무 명확화 ○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 ○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문맥 정비
--	---	---

- 2 -

<p><u>별표 1의 십사업무 수탁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u></p> <p><u>제4조(수탁기관의 지정 계획 공고)</u> 관세청장은 <u>십사업무</u>의 물량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수를 정하여 수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p> <p><u>제5조(수탁기관의 지정 신청)</u></p> <p>①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십</p>	<p>----- ----- -----.</p> <p>제4조(수탁기관 지정 계획 공고) -----<u>십사지원업무</u> ----- ----- -----. ----- ----- -----. -----.</p> <p>제5조(수탁기관 지정 신청) ① ----- ----- ----- ----- ----- <u>십사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 정비 및 위탁업무 명확화
---	---	--

- 3 -

<p><u>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u>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p> <p>1. ~ 5. (생략) ② 관세청장은 <u>십사업무</u> 수탁기관의 지정 신청을 마감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관의 지정 여부에 대한 결과</p>	<p><u>원 업무</u> ----- ----- ----- ----- -----. -----.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p>1. ~ 5. (현행과 같음) ② ----- <u>십사지원업무</u> ----- ----- --- <u>지정</u>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 정비
--	--	---

- 4 -

<p>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6조(수탁기관의 지정 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u>심사업무</u> 수탁기관 지정 신청에 대해 관세청 소속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u>심사업무</u> 및 전산업무 담당공무원 5명 이상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p> <p>② (생략)</p> <p>제7조(기술평가위원회) ① 관세청장은 제2조에 따른 <u>심사업무</u> 수탁기관 지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p>	<p>-----.</p> <p>제6조(수탁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① ----- ----- <u>심사업무</u> 수탁기관 ----- ----- -----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기술평가위원회) ① --- ----- <u>심사업무</u> -----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 정비,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 ○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
--	--	---

- 5 -

<p>를 구성한다.</p> <p>② ~ ⑥ (생략)</p> <p>⑦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수탁기관 지정을 심의할 수 있다.</p> <p>⑧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하여 <u>영 제101조의2</u>를 준용한다.</p> <p>제8조(지정서 발급) 관세청장은 제7조에 따른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입 안전</p>	<p>-----.</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u>수탁기관</u> ----- ----- ----- ----- -----. ⑧ ----- <u>「관세법 시행령」 제101조의2</u>----- -----.</p> <p>제8조(지정서 발급) ----- -----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 정비 ○ 문맥 정비 ○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
--	--	---

- 6 -

관리 우수업체 <u>심사업무</u> 수탁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u>심사업원 업무</u> ----- ----- -----.	
제9조(<u>심사업무의 위탁</u>) (생략)	제9조(<u>심사업원 업무의 위탁</u>) (현행과 같음)	○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
제10조(<u>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위탁 계획 통지</u>)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u>심사업무</u> 위탁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량 및 사업 예산 등의 계획을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u>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원 업무 위탁 계획 통지</u>) ----- ----- <u>심사업원 업무</u> ----- ----- -----. -----.	○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
제12조(<u>위탁 심사업무의 결과 보고</u>) 수탁기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u>심사업무</u> 의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	제12조(<u>위탁 업무의 결과 보고</u>) ----- ----- <u>심사업원 업무</u> -----	○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

- 7 -

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그 <u>심사업무</u> 의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u>위탁업무</u> ----- ----- -----.	
제13조(<u>재심사 요구</u>) 관세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u>심사업무</u> 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u>재검토 요구</u>) ----- ----- ----- <u>심사업원 업무</u> ----- ----- 경우 수탁기관 재검토----- -----.	○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 문맥 정비
제14조(<u>비밀준수의 의무</u>)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u>심사업무</u> 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를 해당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제14조(<u>비밀준수의 의무</u>) ----- ----- ----- <u>심사업원 업무</u> ----- ----- -----.	○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

- 8 -

<p>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 폐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 의 경우에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p> <p>제15조(지휘 · 감독 및 수탁기관 의 의무 등) ① 관세청장은 영 제259조의2제4항에 따라 수탁 기관에게 수출입 안전관리 우 수업체 <u>심사업무</u>에 관하여 지 휘 ·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② 관세청장은 매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u>심사업무</u> 위탁계약 체결 전과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이 제 3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p>	<p>----- ----- ----- -----.</p> <p>제15조(지휘 · 감독 및 수탁기관 의 의무 등) ① ----- <u>「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 13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 ----- <u>심사지원 업무</u>----- ----- -----.</u></p> <p>② ----- ----- <u>심사지원</u> <u>업무</u> -----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법령 변경 및 문맥 정비 ○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
---	---	---

- 9 -

<p>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p> <p>③ 관세청장은 <u>수출입 안전관 리 우수업체의 심사결과 보고</u> 의 명확성, 정확성, 만족도 등 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실적 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 할 수 있다.</p> <p>④ 수탁기관은 영 제259조제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p> <p>⑤ (생 략)</p> <p>제16조(지정의 승계 등) ① (생 략)</p> <p>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p>	<p>-----. ----- ----- ----- -----. ----- ----- ----- ----- ----- ----- -----. ----- ----- -----.</p> <p>③ ----- <u>위탁업무 결과</u>- ----- ----- ----- ----- -----. ----- ----- ----- ----- -----.</p> <p>④ ----- <u>제3조에 따른</u> <u>수탁기관 지정 요건 중</u> --- 경우 ----- ----- ----- -----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지정의 승계 등) ① (현 행과 같음)</p> <p>②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 정비 ○ 문맥 정비 ○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
--	---	---

<p>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부칙 신설></p>	<p>----- ----- ----- ----- <u>심사지원 업무</u> ----- ----- -.</p> <p>제17조(재검토기한) ----- ----- ----- ----- <u>2024</u> ----- ----- ----- -----.</p> <p>부칙 <제2024-12호, 2024.03.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검토기한의 재설정 ○ 부칙 신설
--	---	---

- 11 -

	<p><u>이 고시는 2024년 3월 14일부터</u> <u>시행한다.</u></p>
--	---

- 12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요건(제3조 관련)			[별표 1]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의 요건(제3조 관련)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전문인력	직급	자격사항	직급	자격사항	인원
	책임연구원	- 해당 종목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책임연구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2명 이상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3명 이상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4명 이상
	○ 전문인력은 심사업무를 전담할 것		○ 전문인력은 심사지원 업무를 전담할 것		
	○ 효율적인 심사업무 처리 절차서(검토 및 결재 등)를 마련할 것		○ 효율적인 심사지원 업무 처리 절차서(검토 및 결재 등)를 마련할 것		
전산설비	분야	구비사항	분야	구비사항	
	사업장	- 출입이 통제되고, 보안 관리가 철저한 독립된 사업장을 갖출 것	사업장	- 출입이 통제되고, 보안 관리가 철저한 독립된 사업장을 갖출 것	
	하드웨어	- 개인용 컴퓨터, 전화기, 팩스, 복사기 등 충분한 사무기기를 갖출 것	하드웨어	- 개인용 컴퓨터, 전화기, 팩스, 복사기 등 충분한 사무기기를 갖출 것	
	전산망	- 관제형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며, 해킹·바이러스 등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될 것	전산망	- 관제형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며, 해킹·바이러스 등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될 것	
	소프트웨어	- 정식으로 허가받은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인가 소프트웨어의 설치는 금지될 것	소프트웨어	- 정식으로 허가받은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인가 소프트웨어의 설치는 금지될 것	
	보안규정	- 심사업무 등과 관련한 정보통신보안규정을 갖출 것	보안규정	- 심사지원 업무 등과 관련한 정보통신보안규정을 갖출 것	

- 13 -

[별표 2] 수탁기관 지정 평가지표(제7조 관련)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업계획서의 학점수 평가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 사업의 특성, 목적 등 이해도</td> <td>5</td> </tr> <tr> <td>• 사업수립 내용의 품질·구성 여부</td> <td>5</td> </tr> <tr> <td>• 사업 추진 전략의 탄력성</td> <td>5</td> </tr> <tr> <td>• 사업 수행 참여인원, 일정 등 출입부의 적합성</td> <td>5</td> </tr> <tr> <td>• 사업 수립 상작과 출입부를 관리·방법과의 적합성</td> <td>10</td> </tr> <tr> <td>• 사업 수립 방법과 출입부 내부 일정 프리미엄 평가</td> <td>10</td> </tr> </tbody> </table>	항 목	평점	• 사업의 특성, 목적 등 이해도	5	• 사업수립 내용의 품질·구성 여부	5	• 사업 추진 전략의 탄력성	5	• 사업 수행 참여인원, 일정 등 출입부의 적합성	5	• 사업 수립 상작과 출입부를 관리·방법과의 적합성	10	• 사업 수립 방법과 출입부 내부 일정 프리미엄 평가	10	40
항 목	평점															
• 사업의 특성, 목적 등 이해도	5															
• 사업수립 내용의 품질·구성 여부	5															
• 사업 추진 전략의 탄력성	5															
• 사업 수행 참여인원, 일정 등 출입부의 적합성	5															
• 사업 수립 상작과 출입부를 관리·방법과의 적합성	10															
• 사업 수립 방법과 출입부 내부 일정 프리미엄 평가	10															
○ 업무인력의 관련 학력과 경력 업무인력 경력·점수 산식 = (획득점수/100) × 30 * 업무인력의 수가 10명을 넘을 경우에는 절반·점점이 높은 순으로 10명까지만 인정하여, 1인당 최고점수는 15점 * 업무인력의 결핵 평가점수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무인력의 관련 학력·점수 산식 업무인력 경력·점수 산식 = (획득점수/100) × 30 * 업무인력의 수가 10명을 넘을 경우에는 절반·점점이 높은 순으로 10명까지만 인정하여, 1인당 최고점수는 15점 * 업무인력의 결핵 평가점수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무인력의 경력 업무인력 경력·점수 산식 • 최모종이 10년 이상 결핵 소유자 10 • 최모종이 7년 이상 결핵 소유자 8 • 최모종이 5년 이상 결핵 소유자 6 • 최모종이 3년 미만 결핵 소유자 4 * 판사회원 소지자는 4점, 식사학원 소지자는 2점을 해당 면접에 가점 (최종 학위) * 판서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2점을 해당 면접에 가점 * 최모종이 결핵은 관세전산 관계 법령분야와 관계 있는 결핵을 필수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종합평가 평가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 위탁수행여건 평가 (계약, 보안관리 등 포함)</td> <td>5</td> </tr> <tr> <td>• 신청기관의 제3자인정증</td> <td>5</td> </tr> <tr> <td>• 협약포함한 협약증명 평가</td> <td>10</td> </tr> <tr> <td>• AEO 제도 연구역량</td> <td>5</td> </tr> <tr> <td>• 능률, 보고서, 제도개선 건의 등</td> <td>10</td> </tr> </tbody> </table>	항 목	평점	• 위탁수행여건 평가 (계약, 보안관리 등 포함)	5	• 신청기관의 제3자인정증	5	• 협약포함한 협약증명 평가	10	• AEO 제도 연구역량	5	• 능률, 보고서, 제도개선 건의 등	10				
항 목	평점															
• 위탁수행여건 평가 (계약, 보안관리 등 포함)	5															
• 신청기관의 제3자인정증	5															
• 협약포함한 협약증명 평가	10															
• AEO 제도 연구역량	5															
• 능률, 보고서, 제도개선 건의 등	10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종합평가 평가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 협약수행여건 평가 (계약, 보안관리 등 포함)</td> <td>5</td> </tr> <tr> <td>• 신청기관의 제3자인정증</td> <td>5</td> </tr> <tr> <td>• 협약포함한 협약증명 평가</td> <td>10</td> </tr> <tr> <td>• AEO 제도 연구역량</td> <td>5</td> </tr> <tr> <td>• 능률, 보고서, 제도개선 건의 등</td> <td>10</td> </tr> </tbody> </table>	항 목	평점	• 협약수행여건 평가 (계약, 보안관리 등 포함)	5	• 신청기관의 제3자인정증	5	• 협약포함한 협약증명 평가	10	• AEO 제도 연구역량	5	• 능률, 보고서, 제도개선 건의 등	10				
항 목	평점															
• 협약수행여건 평가 (계약, 보안관리 등 포함)	5															
• 신청기관의 제3자인정증	5															
• 협약포함한 협약증명 평가	10															
• AEO 제도 연구역량	5															
• 능률, 보고서, 제도개선 건의 등	10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종합평가 평가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항 목</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 협약수행여건 평가 (계약, 보안관리 등 포함)</td> <td>5</td> </tr> <tr> <td>• 신청기관의 제3자인정증</td> <td>5</td> </tr> <tr> <td>• 협약포함한 협약증명 평가</td> <td>10</td> </tr> <tr> <td>• AEO 제도 연구역량</td> <td>5</td> </tr> <tr> <td>• 능률, 보고서, 제도개선 건의 등</td> <td>10</td> </tr> </tbody> </table>	항 목	평점	• 협약수행여건 평가 (계약, 보안관리 등 포함)	5	• 신청기관의 제3자인정증	5	• 협약포함한 협약증명 평가	10	• AEO 제도 연구역량	5	• 능률, 보고서, 제도개선 건의 등	10				
항 목	평점															
• 협약수행여건 평가 (계약, 보안관리 등 포함)	5															
• 신청기관의 제3자인정증	5															
• 협약포함한 협약증명 평가	10															
• AEO 제도 연구역량	5															
• 능률, 보고서, 제도개선 건의 등	10															
※ 평가항목 중 객관적 수치에 따른 평가는 모든 위원 공통평가																
※ 평가항목 중 객관적 수치에 따른 평가는 모든 위원 공통평가																

- 14 -

[별지 제1호서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제5조 관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이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설립 목적			
설립 일자			
전화 분야			
불법서류		제출여부	
1) 사업자등록증 사용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3) 사업계획서(조직, 전략인력, 사업장, 생산설비 내역 및 자주상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4) 사업장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와 관련한 연구실적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관세법 시행령」 제269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금지(80g/m²) 또는 황금지(80g/m²)]

[별지 제1호서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제5조 관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이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설립 목적			
설립 일자			
전문분야			
불법서류		제출여부	
1) 사업자등록증 사용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3) 사업계획서(조직, 전략인력, 사업장, 생산설비 내역 및 재무상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4) 사업장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와 관련한 연구실적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금지(80g/m²) 또는 황금지(80g/m²)]

— 15 —

[별지 제2호서식] 수탁기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현장조사표(제6조 관련)

수탁기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현장조사표

프사 판	프사일자	소속	설명(서명)	소속	설명(서명)
		총 ○○○○파		총 ○○○○파	
구 비 율 감	20	총 ○○○○파		총 ○○○○파	
	1	비밀리 벌인 또는 단체인가?	예() 아니오()		
	2	전문인력 (1) 직급별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가? 책임연구원: 몇, 연구원: 몇, 연구보조원: 몇 (2) 전문인력을 실 사업부를 전달하는가? (3) 훌륭적인 실사업부 출신인원이 마련되었는가?	예() 아니오()		
회 업 서 류	3	전산설비 (1) 출입통제 및 보안관리기기 설치 및 활용은 사업장을 갖추었는가? (2) 개인용 컴퓨터 등 출퇴근 사무기기를 갖추었는가? (3) 관제실 전산망과 연결되며, 외부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가? (4) 정식 허가받은 소프트웨어인 설치되었는가? (5) 실사업부로 원활하여 출퇴근 통보통신 보안규정을 갖추었는가?	예() 아니오()		
	1	사업자등록증 사용	예() 아니오()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예() 아니오()		
	3	사업계획서(조직, 전략인력, 사업장, 생산설비 내역 및 자주상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프사일자)	예() 아니오()		
	4	사업장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예() 아니오()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와 관련한 연구실적 등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연구실적 증명서 제출	예() 아니오()		
프사일자 총명	※ 기본적으로 모든 항목에 '예'가 되어야 하며 결의하여 관리자는 사용을 사용 로운으로 증명을 작성할 수 있음				

210mm×297mm[백금지(80g/m²) 또는 황금지(80g/m²)]

[별지 제2호서식] 수탁기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현장조사표(제6조 관련)

수탁기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현장조사표

프사 판	프사일자	소속	설명(서명)	소속	설명(서명)
		총 ○○○○파		총 ○○○○파	
회 업 서 류	1	비밀리 벌인 또는 단체인가?	예() 아니오()		
	2	전문인력 (1) 직급별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가? 책임연구원: 몇, 연구원: 몇, 연구보조원: 몇 (2) 전문인력을 실사자체 출퇴근 통보 등을 전달하는가? (3) 효율적인 실사자체 출퇴근 통보 등을 마련되었는가?	예() 아니오()		
	3	전산설비 (1) 출입통제 및 보안관리기기 설치 및 활용은 사업장을 갖추었는가? (2) 개인용 컴퓨터 등 출퇴근 사무기기를 갖추었는가? (3) 관제실 전산망과 연결되며, 외부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가? (4) 정식 허가받은 소프트웨어인 설치되었는가? (5) 실사자체 출퇴근 통보 등을 보안규정을 갖추었는가?	예() 아니오()		
	1	사업자등록증 사용	예() 아니오()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예() 아니오()		
	3	사업계획서(조직, 전략인력, 사업장, 생산설비 내역 및 자주상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프사일자)	예() 아니오()		
	4	사업장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예() 아니오()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와 관련한 연구실적 등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연구실적 증명서 제출	예() 아니오()		
	프사일자 총명	※ 기본적으로 모든 항목에 '예'가 되어야 하며 결의하여 관리자는 사용을 사용 로운으로 증명을 작성할 수 있음			

210mm×297mm[백금지(80g/m²) 또는 황금지(80g/m²)]

— 16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
2. 기관명 :
3. 대표자 :
4. 주소 :

위 기관을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 . . .

관세청장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
2. 기관명 :
3. 대표자 :
4. 주소 :

위 기관을 「관세법」 제3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 . . .

관세청장